강서5호점(공항동)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년 10월 13일 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9월 29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9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10.1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)

가. 제안이유

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기관인 강서5호점(공항동)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(m²)	비고
강서5호점(공항동)	공항대로 124, 제업무시설동	143	민간 건물
우리동네키움센터	1105동 101호, 102호	(약 43평)	임차

- 위탁사무내용
 -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평가, 모니터링 등
 -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
 - 그 밖에 돌봄 관련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
- 위탁기간: 5년(2021. 12. 1. ~ 2026. 11. 30.)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경쟁모집에 따른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
- 소요예산: 769,050천원(국비: 98,309천원, 시비: 597,541천원, 구비: 73,200천원)

2) 추진일정

- 2021년 10월: 모집공고 및 접수
- 2021년 11월: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
- 2021년 12월: 센터 운영 실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○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2
- ○「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
- 「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-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개소예정인 강서5호점(공항동) 우리동네키움 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
-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 되고,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난 9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'적정'심의완료 하였음
- 검토 결과,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 (다함께돌봄센터)에 근거하여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등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·민간 자원의 연계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한 위탁체 선정, 철저한 준비와 지도·감독을 통하여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생략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참고 관계 법령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있다.

-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- 3. 등・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-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<u>위탁계약기간은 5년</u> <u>으로 한다.</u>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 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8조(돌봄 시설의 위탁·운영)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<u>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</u>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

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여성 · 청소년 · 아동 · 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- **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9조(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
 - 2.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
 - 3.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